

환경부는 사후규제중심의 현행 환경정책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

현행 사후규제만으로는 기업으로 하여금 법정 기준치 이하로 지속적인 환경개선노력을 유인하기 어려울 뿐더러 오염저감 면에서도 사후처리방식이 비효율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환경부는 제품설계부터 원료조달, 생산공정, 사후처리에 이르기까지 사업활동 전과정에 걸쳐 기업의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여기에 WTO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무역과 환경을 연계하여 생산공정까지 문제삼으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업계의 대응을 촉진하고, 최근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중인 환경영향평가는(ISO 14000 series)의 국내수용을 확산시키자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 체제의 도입을 통하여 구체적인 환경성과를 얻도록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성 평가 및 개선계획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그 실행을 통해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 계획서에는 오염물질의 사후처리는 물론 생산공정을 포함한 총체적인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기업의 실정에 맞는 개선목차를 제시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이 체제를 도입한 기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도입

환경정책

무역과 환경을 연계하여 원료에서 생산공정, 사후관리 등 전과정에 따른 규제가 국제사회에 있어 많은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방안으로 환경부에서는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도입방안을 마련, 실시키로 하여 이를 알아보았다.

업에서는 환경부서는 물론 생산부서 등 전 조직에서 환경개선 노력을 기울여 생산설비에서부터 예컨대 청정연료로의 전환, 폐열 회수, 폐수 재이용, 폐기물 감량, 저오염공정으로의 공법 전환 및 시설 대체 등을 통하여 환경부하를 줄이고, 아울러 최종처리에 있어서도 방지시설의 최적운전조건을 유지하여 그 효율화를 높이도록 하였다.

이 체제의 보급을 계기로 환경행정당국과 기업간의 불신과 대립적 관계를 청산하고,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업계 스스

로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이 체제를 도입한 환경친화적 기업에 한하여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면제하여 허가과정에서 소용되는 시간과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이를 업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지도단속을 면제하여 그들이 정부의 단속으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나 예측가능성을 갖고 조업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범업소 지정요건으로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의 도입을 명시하여, 그 지정을 희

망하는 업체는 반드시 이 체제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자가측정 의무 문제, 중소기업의 경우 세제, 금융 등의 우선지원으로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향후 심사기법과 평가기준을 객관화하여 매년 종합심사결과 일정한 수의 기업을 순위에 따라 대표적인 환경친화적 기업으로 공표 하므로써 환경개선에 관한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각종 단체와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가 이를 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이 체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접수하기 시작하여 이들로부터 「환경성평가및개선계획서」를 받아 서류심사를 통해 상반기중 참여기업을 확정하고 연말께 이들 기업이 당초 제출한 계획서대로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종합심사할 계획이다.

종합심사 결과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포상과 아울러 각종 행정적 규제완화 및 지원 등 차별적 지위가 부여된다.

앞으로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에 업계의 호응도가 높아지면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예고된 방문을 통한 환경심사제도를 정착시키고, 불시지도단속은 이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한정하여 단속의 효율적인 환경관리의 도입을 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업계와 공동으로, 청정연료사용, 폐수재이용 또는 저공해 신공법으로

의 공정전환 등이 포함된, 생산공정에 있어서의 전과정평가(LCA : Life Cycle Assessment)에 기초한 업종별 세부 환경관리지침을 개발하여 이를 전 산업계에 보급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1.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 제 개요

• 환경관리체제 구축

-환경부서는 물론 생산부서등 전조직의 환경관련 역할 및 업무절차 체계화

• 관리부: 환경부적합 사항에 대한 원인조사 및 시정 조치, 환경투자계획의 수립

• 생산부: 생산현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파악, 평가

• 자재부: 구매품종 환경부적합 원·부재료에 대한 문제점 파악

• 환경성평가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품설계부터 생산 및 사후처리까지 사업활동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환경영향을 평가

• 용수, 유독물질, 에너지 및 원재료 사용량 등

• 생산공정 및 공법의 환경성 평가

• 대기, 수질, 폐기물등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양등

• 환경개선 목표 설정, 이행

-환경성평가를 토대로 오염물질별 삭감계획, 방법(공정개선 및 투자계획포함)등 구체적인 환경개선계획 마련

-환경목표의 예

• '96년까지 SO₂ 및 폐수 10% 감축, 폐기물재활용 10% 증가

-개선방법의 예

• 제품설계: 제품 및 포장의 폐기물 감량, 재활용 촉진

• 관리개선: 설비 및 공정의 최적운전조건 유지, 공정상 누출방지

• 공정개선: 청정연료 전환, 생산설비 개체, 원재료 등 투입물질 변경, 염소표백·용제 등 대체

• 현장재이용(on-site recycling): 폐수재이용, 염료 및 용제 등 회수재이용, 폐기물 감량 및 재이용

• 방지시설 개선 및 운영 최적화

2. 도입배경

가. 필요성

-환경관리를 사후처리위주에서 생산 전과정으로 확대시 효율성 달성

-법정 기준치 이하로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유인할 정책수단이 필요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려는 국제적 동향에 기업의 능동적 대처 유도

나. 국내외 동향

• 국제동향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서는 ISO 14000 series라는 불리우는 환경영영표준화 작업중('96~'98년 완성예정)

- 영국은 '92년 환경관리체제에 관한 「BS 7750」을 제정한 바 있고, EU는 '93년 「환경관리감사 규정(Eco-Management and Audit Regulation : EMAR)」을 제정하여 '95. 4월부터 시행 예정

-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환경영향 평가 및 개선대책에 관한 "기업환경보고서" 작성
- 이를 대중에게 공표함으로써 지속적인 환경성과 촉진

- 일본 환경청에서는 '93년 「환경친화적인 기업행동지침」 제정
• 통산성에서는 '92년 「자발적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94년에는 「산업환경비전」을 마련하여 주요 업종별 자율적 환경관리를 추진

• 국내동향

- 환경부에서는 '94년부터 환경보전자율실천운동의 일환으로 「폐수 10%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기업체의 자율적인 대기환경관리 방안」을 마련 중

• 또한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도 관내 업체에 대한 「종합환경관리시스템」 도입 추진
- 삼성, 금호등 4개사에서 ISO 14000 series의 토대가 되는 BS7750 인증 획득

• 이들 업체는 해외거래선의 환경관리체제에 대한 암묵적 요구에 대응하고 대내외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증 획득
• 여러 기업체에서 BS 7750 및 ISO 14000 series 인증 획득에 많은 관심 표명

- 두산그룹에서는 내부환경감사팀을 구성하여 계열사 환경관리 실태 감사

3. 업계참여 유인방안

- 배출시설 설치허가 면제
- 지도단속 면제
- 모범업소 지정요건으로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구축 명시
- 「환경관리모범업소지정및운영규정」을 폐지하고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운영규정」에 모범업소 관련규정을 포함
- 기타 유인 방안
- 참여업체에 자가측정 의무면제
-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자금 우선융자(융자요강 개정)
- 종합심사결과 우수업소를 선정 공표 및 포상(가칭 환경대상, 대기개선상, 수질개선상 등)

4. 추진일정

- '95년 3월 :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도입 방안 마련
 -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운영규정」 제정
 - 「환경성평가및개선계획서」, 「환경관리지침」 모형 작성
- '94년 4월 : 참여 기업 접수 및 심사팀 구성
 - 참여기업접수
 - 환경관리체제 운영 모범기업 사례발표회 개최
 - 「환경성평가및개선계획서」, 「환경관리지침」 작성 요령 교육 실시
 - 심사팀 구성(본부, 환경관리청, 환경관리공단)
- '95년 5월 : 계획서 심사 및 참여기업 확정
- '95년 6월 : 기업의 「환경성평

가 및 개선계획서」 이행

- '95년 7~11월 : 종합심사 방법 마련 및 관련 법령 개정
- '95년 12월 : 종합심사후 우수업체 선정, 포상 및 공표

5. 기대효과

가. 다양한 정책수단 활용기반 조성

- 사후규제 중심의 현행 환경정책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생산공정 전과정에 걸친 오염저감 유도
- 지도단속 위주에서 업계의 자율적 환경관리로 전환
- 환경관리의 범위를 최종배출구(end-of-pipe) 중심에서 생산공정(PPMs)으로 확대
- 법정기준 이하로 지속적인 환경개선 유도

나. 기업측의 잠재적 잇점

- 환경개선 효과를 추구하면서, 지역주민 및 환경당국등 이해관계자에게 환경친화적 기업 이미지 제고
- 폐기물, 에너지, 자원등의 절감등 손실방지(loss prevention)를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
- ※ 3M의 경우, '75~'92년까지 대기·수질 등 오염물질 감축 및 누수량을 줄여 6억5천만불(약 5천억원) 절감
- 향후 환경관리체제 도입기업의 ISO 14000 인증준비시 시간 및 비용 절감